

제 호

방사선발생장치사용(이동사용)신고확인증

1. 상 호:
2. 주 소:
3. 대표자: (생년월일 :)
4.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·용량 및 대수:
5. 사용목적:
6. 사용장소:
7. 신고일자:

위와 같이 「원자력안전법」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(이동사용)신고를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

직인

(뒤쪽)

[illegible]